진도군 공고 제2026-371호

소액 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소액 수의계약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물 품 명 : 2026년 수산종자(해삼) 매입·방류사업

나. 방류장소 : 진도군 해역 일원

다. 구매내역(시방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 가(원)	수 량(미)	사업비(원)	비 고
해삼	체중 1.0g ~ 7.0g	583	30,874	18,000,000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초금액 : 미당 583원 (부가세 면세)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투찰자께서는 반드시 기초금액(단가입찰)을 기준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개별품목가격은 개별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8. 10:00	2026. 10. 14. 14:00	2026. 10. 14. 15:00	입찰집행관 PC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계속하여 위치**한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부화지,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수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단,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인증 품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마. 견적제출자로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자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에게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아 견적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2026.10.14. 14:00 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미제출 시 입찰집행 사전판정에 부적격업체로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FAX 061-540-3396) TEL 061-540-3334

※ 최종 낙찰자 결정은 "종자생산확인" 및 "질병검사결과"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수신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우리군 수산지원과 담당자(☎061-540-3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물품 구매 공고는 **단가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진도군 청렴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40-3334)**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진도군청 수산지원과(☎061-540-3564)**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시방서, 기타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및 견적제출 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진 도 군 분 임 재 무 관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진도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진도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